##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08

발의연월일: 2025. 1. 2.

발 의 자: 박지혜·박정현·김성환

황명선 • 민형배 • 위성곤

이소영 · 이용우 · 조인철

이건태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·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등은 「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 격거리를 두고 있어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·재생에너 지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, 이격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3(신·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허가 지원)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 발행위의 허가 기준에 신·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7조의3(신ㆍ재생에너지 발전
	설비에 대한 허가 지원) 산업
	통상자원부장관은 「국토의 계
	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
	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
	기준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
	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
	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
	여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
	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
	지원할 수 있다.